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토스페이먼츠

2. 조치일 : 2026. 7. 2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해외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이행 여부 등 확인 강화

회사가 수행하는 해외결제대행업자를 통한 해외고객의 결제대금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는 국경 간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가맹점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사는 2023.7.25. 해외결제대행업자인 A와 해외고객이 국내 가맹점을 이용하는 인바운드 결제에 대한 정산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A에 대한 고객 확인을 별도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해외결제대행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해외고객의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해외결제대행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업무 취급시 확인절차 강화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은 고객과의 대외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외국환업무 취급시 정상 가맹점 여부, 거래품목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부항목을 정하고 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사는 온라인 해외가맹점에 대해 등록심사는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 (예시) 접속이 안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는 온라인 해외가맹점임에도 URL 변경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온라인 해외가맹점에 대해 사후관리를 면밀히 하여 허위 가맹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산대금 해외송금시에 구체적 거래품목을 파악하는 등 외국환업무 취급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강화 필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고객 위험도에 따라 고객 확인 주기를 설정하여 재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가맹점 등록시 고객이 입력한 정보만으로 AML시스템을 관리하여 고객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 (예시) 해외 가맹점 대표가 외국인임에도 대표자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또한, 해외PG사 및 가맹점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내규상 1년)가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재이행 주기 도래한 18개사에 대해 미실시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가맹점 등록시 고객 입력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계속 거래 고객에 대해 주기적인 고객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